

보도시점 2026. 6. 14.(일) 12:00 (월요일 조간) 배포 2026. 6. 12.(금)

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에너지복지... 2026년도 에너지바우처 6월 15일부터 신청

- 관할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 누리집(bokjiro.go.kr)에서 신청
- 연탄전환바우처 신설 등 맞춤형 지원으로 사각지대 해소

취약계층이 냉·난방 에너지 요금 부담 없이 안심하고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2026년도 에너지바우처 사업이 7월 1일부터 시작한다.

기후에너지환경부(장관 김성환)는 6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전국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와 복지로 누리집(bokjiro.go.kr)에서 올해 에너지바우처 사업의 신규 신청·접수*를 진행한다고 밝혔다.

- * 전년도 에너지바우처 수급자가 올해 자격 변동이 없는 경우 자동으로 에너지바우처 수급자로 등록될 예정, '25년도 에너지바우처 수급자는 본인의 자격 변동 여부를 주민등록상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에너지바우처 통합상담센터(☎1600-3190)를 통해 확인 가능

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은 '국민기초생활 보장법'에 따른 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 급여 수급 자격이 있고, 본인 또는 세대원이 특정 기준*을 충족해야 한다. 수급세대는 전기·도시가스·지역난방 요금을 청구서에서 자동차감 받거나, 바우처카드(국민행복카드)를 통해 등유·액화석유가스(LPG) 등 필요한 에너지 지원을 직접 구매할 수 있다.

- * 본인 또는 세대원이 노인(65세 이상), 영유아(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), 장애인, 임산부, 중증·희귀·중증난치질환자, 한부모가족, 소년소녀가정(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), 다자녀(세대원 중 부 또는 모가 있고 19세 미만 자녀 2인 이상 포함)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

올해는 수급자의 주거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. 특히, 에너지 비용이 월세 등에 포함되어 에너지바우처로 직접 결제가 어려운 수급자를 대상으로 사업기간 중 에너지비용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'사전 예외지급'을 도입한다.

또한, 연탄쿠폰을 사용중인 에너지 이용 소외계층*을 대상으로 한국에너지재단을 통해 기존 연탄보일러를 비연탄 보일러로 교체하고, 난방연료 전환에 따른 에너지 구입비용을 지급하는 ‘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’도 새롭게 시행한다.

* 기초생활수급자(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), 차상위계층(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), 노인(65세 이상), 장애인, 한부모가족, 소년소녀가정(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)

에너지바우처 신청 후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세대를 직접 방문하는 ‘찾아가는 복지서비스’*도 12만 2천 세대까지 확대하고, 한국에너지공단(전담기관)과 지방정부 간 협력을 통해 취약계층의 에너지바우처 사용량을 조사하여 에너지 위기 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하는 등 촘촘한 에너지복지 지원체계를 구축해 사각지대를 해소할 방침이다.

* 우체국 집배원과 사회복지사 등이 직접 세대 방문을 통해 실태조사, 제도 안내 등을 실시하고 주거환경 등을 고려한 1:1 맞춤형 사용 지원까지 연계 지원하는 서비스

한편, 올해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 확인, 신청·사용 방법 등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에너지바우처 통합 상담센터(☎1600-3190)에서 받으며, 관련 내용은 에너지바우처 누리집(energyv.or.kr)을 통해서도 확인 가능하다.

아울러 연탄보일러 교체 및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한국에너지재단 연탄전환 의향조사 통합센터(☎1877-5488)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.

이경수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정책관은 “중동전쟁 등 에너지 위기 상황 속에서 취약계층이 폭염 등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에너지바우처 적기 신청과 원활한 사용을 적극 지원하겠다”라고 밝혔다.

- 붙임 1. 2026년도 에너지바우처 사업 개요.
2. 2026년도 에너지바우처 사업 안내 포스터. 끝.

담당 부서	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적응과	책임자	과 장	이채원 (044-201-6950)
		담당자	사무관	양동춘 (044-201-6638)
		담당자	사무관	경선희 (044-201-6969)

붙임 1**2026년도 에너지바우처 사업 개요**

- (사업내용)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냉·난방 등에 필요한 에너지(전기·도시가스·지역난방·등유·연탄·LPG 등) 구입비용을 바우처로 지원
- (사업기간/수행기관) '15년(하절기는 '19년) ~ 계속 / 한국에너지공단
- (지원대상) ①소득기준과 ②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
 - ① (소득)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 상 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급여 수급자
 - * '22년부터 지원대상을 생계·의료 급여 → 기존 + 주거·교육 급여 가구까지 확대
 - ② (세대원 특성) 수급자 또는 세대원이 '노인(65세 이상), 영유아(7세 이하 취학 전 아동), 장애인, 임산부, 중증·희귀·중증난치질환자, 한부모가족, 소년소녀가정(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), 다자녀세대(세대원 중 부모 또는 모가 있고 만9세 미만 자녀 2인 이상 포함)' 중 어느 하나에 해당
- (지원금액)

(단위 : 원)

구분	1인 세대	2인 세대	3인 세대	4인 이상 세대
지원금액	295,200	407,500	532,700	701,300

- (신청방법) ①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* 또는 ②복지로 홈페이지(www.bokjiro.go.kr) 를 통해 신청
 - * 수급자 본인 또는 대리인(세대원 또는 친족) 신청 가능, 거동이 불편한 경우 담당 공무원의 직권으로 대상자 동의 후 신청 가능
- (지원방법) 실물카드(국민행복카드) 또는 가상카드(요금차감) 사용
 - ① 실물카드 : 연탄, 등유, LPG 등 수급자가 자유롭게 선택 구입·결제
 - ② 가상카드 : 전기·도시가스·지역난방 요금 고지서에서 사용액 자동 차감
 - * 하절기바우처(전기요금)는 가상카드 방식으로만 지원
- (신청 기간) 2026. 6. 15.(월) ~ 2026. 12. 31.(목)
- (사용기간)

구분	지원방식	사용기간	적용 가능 에너지원
하절기	요금차감	'26.7.1 ~ '26.9.31	▶ 전기
동절기	요금차감	'26.10.1 ~ '27.5.31	▶ 전기·도시가스·지역난방 중 택1
	국민행복카드	'26.10.3 ~ '27.5.31	▶ 전기, 도시가스, 등유, LPG, 연탄



신청장소

주민등록표 등본상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

*거동이 불편한 분은 대리신청 또는 담당 공무원의 직권신청도 가능하니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에 사전 문의

신청기간

2026년 6월 15일~2026년 12월 31일

신청대상

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급여 수급자 이면서, 본인 또는 주민등록표 등본상 세대원이 **노인, 영유아 장애인, 임신부, 중증·희귀·중증난치질환자, 한부모가족, 소년소녀가정(정위탁보호 아동 포함), 다자녀 세대**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
※ (제외대상) 세대원 모두가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보장시설 수급자인 경우

에너지바우처 통합상담센터

☎ 1600-3190

지원금액

구분	1인 세대	2인 세대	3인 세대	4인 이상 세대
지원금액	295,200원 (40,700원)	407,500원 (58,800원)	532,700원 (75,800원)	701,300원 (102,000원)

- 1) 하 동절기 구분없이 사용기간('26. 7. 1. ~ '27. 5. 31.)동안 자유롭게 사용
다만, 연탄쿠폰-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 또는 [긴급복지지원법]에 따른 연료비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괄호 안의 금액만 지원(하절기에만 사용 가능)
- 2) 위 금액은 2026년도 총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금액이 아님

사용안내

구분	사용기간	사용방법
하절기	2026년 7월 1일 ~2026년 9월 30일	가상카드 (요금차감) 전기만 가능
동절기	2026년 10월 1일 ~2027년 5월 31일	가상카드 (요금차감) 전기, 도시가스, 지역난방 중 택1
	2026년 10월 3일 ~2027년 5월 31일	실물카드 (국민행복카드) 전기, 도시가스, 등유, LPG, 연탄

- 1) 가상카드(요금차감)는 사용기간 내에 청구(작성)된 요금고지서에 한해 차감 지원
- 2) 실물카드(국민행복카드)는 사용기간 내에 결제가 완료된 내역에 한해 지원
- 3) 등유, LPG, 연탄 구매 시 배달비 포함하여 결제 가능



에너지바우처가 궁금하신가요?
QR코드를 스캔해 접속해보세요!



홈페이지
www.energyv.or.kr



카카오톡
채널



에너지바우처
챗봇

참고 3

사전 예외지급

- (사업 내용) 에너지바우처 수급자가 바우처로 에너지비용을 결제할 수 없는 환경에 거주하는 경우, 바우처 사업기간 중 에너지비용을 현금으로 지원
 - (지원대상) 에너지바우처 예외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수급자 중 사전 예외지급 신청기간 시점에 에너지바우처 전액 미사용자

< 에너지바우처 예외지급 대상자 >

- 에너지공급자로부터 직접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없거나 에너지이용권을 사용하여 에너지비용의 결제를 할 수 없는 자

* ①월세 등에 에너지비용이 포함, ②일반적인 주거시설이 아닌 곳에 거주, ③중앙난방

- (신청 기간) 2026. 6. 15.(월) ~ 2027. 5. 31.(월)
 - (제출서류) 에너지이용권 발급 (재)신청서, 본인명의 통장사본(압류방지계좌 제외), 주거환경 증빙서류(입실확인서 또는 실거주확인서)

□ (지급기간 및 지급액 산정기준)

- (1차) '26.10월 말 기준 신청 건은 '26.11.10.에 지급
 - (지급액) '25년도 에너지바우처 세대원수별 평균사용액*
 - * '25년도 에너지바우처 세대원수별 지원금액의 절반 이상 사용한 세대의 평균 사용액으로 함(십원 단위에서 반올림하여 백원 단위까지 산출)
- (2차) '26.11월 이후 신청 건은 '26년도 사후 예외지급 기간('27.6 ~ 9월)에 지급
 - (지급액) '26년도 에너지바우처 세대원수별 평균사용액*
 - * '26년도 에너지바우처 세대원수별 지원금액의 절반 이상 사용한 세대의 평균 사용액으로 함(십원 단위에서 반올림하여 백원 단위까지 산출)

□ (지급 방식) 사전 예외지급 입금액은 수급자 본인계좌에만 입금

- 수급자 본인 계좌가 압류방지계좌인 경우 입금 불가능
 - 압류방지 계좌밖에 없는 경우 생계비 계좌*를 개설하여 신청
 - * 생계비 계좌 : 채무가 있어도 월 최대 250만원까지 압류되지 않고 자유롭게 입출금이 가능한 계좌(전 금융기관 1인 1계좌, '26.2월 시행)
- 세대원 또는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 계좌로 대신 수령 불가능

참고4

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

- (사업 내용) 연탄쿠폰 수급가구(4.2만) 등 연탄보일러를 비연탄보일러로 교체를 완료한 세대('26년 최대 1만)에 대체 연료구입비(에너지바우처) 지원
- (지원대상) '26년에 비연탄보일러로 교체를 완료한 연탄보일러 사용 가구 중 아래의 지원조건에 해당하는 자

<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 지원조건 >

- ① (기초생활수급자)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생계급여, 의료급여, 주거급여, 교육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는 자
- ② (차상위계층)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제10호 및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하는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
- ③ (노인) 65세 이상인 사람(1961.12.31. 이전 출생자)
- ④ (장애인) 「장애인복지법」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
- ⑤ (한부모가족)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
- ⑥ (소년소녀가정)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사업 중 소년소녀가정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(「아동복지법」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을 포함)

- (지원금액) 576,000원 ※ 지원금액은 변동될 수 있음

- ① 에너지바우처 수급자

구분	1인 세대	2인 세대	3인 세대	4인 이상 세대
하절기바우처	40,700원	58,800원	75,800원	102,000원
연탄전환바우처	산업통상부 '연탄쿠폰' 지원 금액과 동일			

*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한 경우,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는 신청 불가

- ② 에너지바우처 비수급자

구분	1인 세대	2인 세대	3인 세대	4인 이상 세대
연탄전환바우처	산업통상부 '연탄쿠폰' 지원 금액과 동일			

- (신청 기간) '26년 8월 ~ 12월

- (사용 기간) '26년 10월 ~ '27년 5월